

동거목적 거소 이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내

□ **수급자격 인정 요건**(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, 「고용보험시행규칙」 별표2 제6호)

① **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함으로써** ② **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통상의 교통수단에 따른 통근시간이 왕복하여 3시간 이상 소요**되어 퇴사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됨

※ 통상의 교통수단: 대중교통(버스·지하철·기차 등)을 말하되, 회사에서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

□ **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 준비 서류**

① **배우자나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**
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결혼으로 인한 경우) 내지는 청첩장

② **동거여부 및 부양 필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**

- 주민등록 등본(동거여부 확인)

-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(주소변동 내역 확인)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 초본

- 대상자의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(대상자로 인해 주소이전을 하였음을 입증)

- 부양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- 신청인이 부양할 수밖에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다른 부양의무자: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, 일을 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, 장애인등록증 등 부양의 어려움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)

- 부양대상자의 소득증명원(65세 이상으로 고령인 경우 보통 인정, 그 외는 별도 입증 필요)

③ **신청인의 진술서**

- 위 부양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본인이 작성

④ **통근(왕복)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되었다는 자료**

- 포털사이트(네이버나 다음) 길찾기(대중교통, 자동차 등 통상의 교통수단 선택, 최단 시간 인정) 화면 캡처 출력물

※문의: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(팩스 0508-8230-0153, 전화 032-320-8955~9)

수급자격 신청인 의견진술서

성 명		생 년 월 일	
사업장명		퇴 사 일 자	
회사주소		회사전화번호	
담당업무			

위 본인은 사업장에서 퇴사사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필로 의견을 작성합니다.
(※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)

상기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수급자격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※ 유의사항: 고용보험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동 의견진술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1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에 의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